

특성화사업추진단 운영 규정

제정 2017. 5. 23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경대학교 특성화사업추진단」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.)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기간) 본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, 3년 단위 계속사업으로 2019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운영

제3조(사업단 명칭) 본교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「대경대학교 특성화사업추진단」을 두며,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단에 사업 분야별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단의 구성) ① 사업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(위촉)하며, 임기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원천으로 한다.

② 사업단에 팀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기타 팀의 구성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5조(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) ① 사업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②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는 사업단장과 특성화사업 관련 산·학·연·관 관계자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업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(위촉)하고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사업단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세출·입 예산(안) 및 지출계획서 수립에 관한 사항

3. 특성화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주요 변경사항에 관한 사항
 4. 특성화 사업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보고서 심의
 5. 사업단의 규정 및 세칙 제·개폐에 관한 사항
 6. 특성화 사업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
 7. 기타 사업단 운영관련 중요사항
- ⑦ 특성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단내 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에 따른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, 사업단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- ④ 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특성화사업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 평가
 2. 국내외 주요 평가인증기관 또는 외부 평가단에 의한 평가 계획
 3.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운영
 4. 평가결과 환류를 통한 사업단(팀) 운영개선시스템 운영
- ⑥ 특성화 사업 자체평가는 매년 실시한다.
- ⑦ 특성화자체평가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,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기타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사업기간) 이 규정은 사업단의 사업이 중단 또는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갖는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이전에 시행한 사업단(팀) 수행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